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배경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이하 “WIPO 센터”)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MCST”)와 함께 B2B(Business to Business)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법제 연구, 추가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저작권 또는 콘텐츠와 관련된 B2B 분쟁에 대한 ADR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들은 실제로 B2B차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데이터베이스 보호, 도서 및 출판(전자책 포함), 모바일 앱, 음악 및 녹음물, 사진, 소프트웨어, TV 포맷, 비디오 게임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의 쟁점은 크게 (1)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누가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지식재산의 양도와 같은 권리의 거래, (3) 라이선스 비용 설정과 같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소송 방식이 부적합한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관계가 저해될 수 있고, 소송의 관할권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의 경우 분쟁이 요구하는 속도, 비밀유지, 분야별 전문성, 경제적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조정, 중재 또는 전문가결정 등을 포함한 ADR이 보다 적합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AD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 및 화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ODR))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ADR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P 전문가 단체는 ADR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각 국의 지식재산(IP) 담당부서들은 소송의 대안으로 ADR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KCC))와 WIPO 센터의 저작권 관련 ADR 사건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OCSSP))를 포함한 ‘B2B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에의 ADR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목표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B2B 분쟁과 관련하여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ADR 제도 이용 확산에 대해 파악합니다.
- B2B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야 및 저작물의 종류를 파악합니다(예: 소프트웨어, 음악 및 기타 저작물).
- 이러한 분쟁의 성격(예: 계약상/비계약상)을 유형화하고 주요 특징을 파악합니다.
- 해당 청구들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의 범위(즉, 상업적 거래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와 선호되는 해결방안(예: 손해배상, 로열티, 침해 또는 비침해선언, 삭제(takedown) 등)를 파악합니다.
-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분쟁 시나리오에서 당사자들의 화해(settlement)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합니다.
- 비용, 속도, 결과의 질, 비밀유지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해결 수단과 절차(법원소송,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등)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이러한 분쟁들과 관련한 ADR 수단의 종류별로 기회요인, 위협요인 및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응답자 및 결과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29개 국가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조사에 대한 997건의 응답과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 대한 74건의 응답을 토대로 합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들이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에는 조정인과 중재인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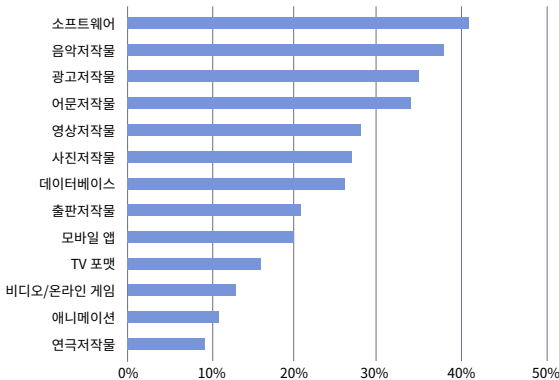
분쟁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65%는 신청인이거나 신청인측 대리인 경험이, 45%는 피신청인이거나 피신청인측 대리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연관되었던 분쟁은 성격상 비계약상 분쟁이고 국내 분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분쟁 대상은 소프트웨어, 음악저작물, 광고 및 어문

등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응답자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연관되는 분쟁유형은 침해와 라이선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 비계약상 분쟁은 주로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침해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과반수가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이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프 0.1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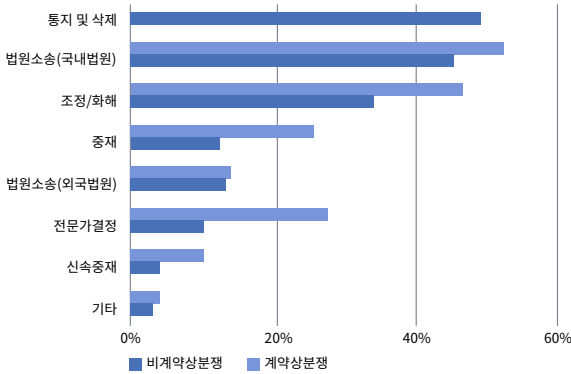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연관되었던 분쟁의 금액대가 다양했는데, 대다수(59%)가 USD 10,000 내지 100,000 구간에 속했습니다. 이와 달리, 금전적 액수와 무관한 분쟁에 연관되었던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했습니다(36%).

분쟁 결과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가장 많이 선택한 해결방안은 손해배상이었고, 그 다음이 로열티였습니다. 침해 공표와 계약 재협상 또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은 흔히 합의를 통해 종료되었습니다.

분쟁해결수단에 있어, 응답자의 국내법원(home jurisdiction)에서의 소송이 계약상/비계약상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통지(notice)와 삭제(takedown)’가 비계약상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수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집중관리단체만 내부의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거나 ADR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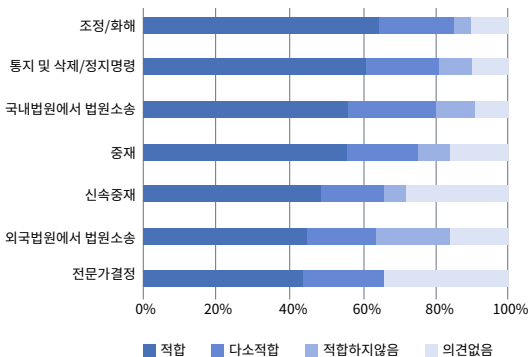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문서로만 진행되는 절차(64%)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32%)와 전자적 사건 신청 및 관리(29%)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응답자의 2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실제 사건 간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프 0.2 사용된 분쟁해결수단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사용된 다양한 수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수단에 대해 적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조정, 통지 및 삭제, 중재, 국내법원에서의 법원소송등은 모두 적합한 수단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프 0.3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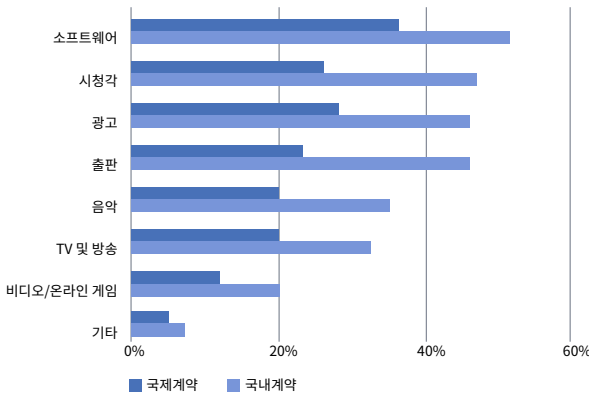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내분쟁인지 국제분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해결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의 우선순위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비용과 속도였고, 그 다음은 결과의 질과 이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계약

WIPO-MCST 설문조사에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64%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약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청각, 출판, 광고 계약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과 관련한 내부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는 ADR 수단도 각자의 내부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0.4 체결된 계약의 분야



보고된 동향 및 필요 개선점

WIPO 센터는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동향이 관찰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ADR에 친숙해지고 ADR을 점점 더 많이 신뢰하면서 ADR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신속한 중재 및 전문가결정과 저작권 분쟁에 맞춰진 ADR 절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PO 센터가 그간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의 사용 또한 일반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준적이고 맞춤형 전문적 규칙과 절차, 그리고 관련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공 기관/단체의 설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ODR) 과정 및 수단의 이용을 언급하고, 제도적으로 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R의 실무 적용: 현황 및 가능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수단의 최근의 변화

최근 규정의 발전은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의 대안으로 대체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과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EU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DSM Directive))에서 ADR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저작물 라이선스 관련 협상과 합의에 있어 ADR, 특히 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fair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을 제공하는 계약 조정이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 ADR 절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게시(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물에 대한 접근이나 삭제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CCSP)들이 사용자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법적 보호와 사법적 구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 외 구제수단(out-of-court redress mechanism)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로드 필터링, 사람의 검토, ADR 및 법원소송과 같이, 보호 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 및 온라인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통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 특히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중인 다수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물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시정 수단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 검토가 가능케하는 동시에 예외 또는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의 적용 여부 결정에 있어 자동 필터링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보다 복잡한 청구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사람에 의한)내부적 검토만으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된 맞춤형 ADR 절차의 개발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외 수단이나 사법적 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필요합니다(예: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9항). 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ADR제도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이해관계자들(사용자, 권리보유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등)을 도울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각자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 맞춰진 표준 WIPO ADR 조항들을 분쟁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DR제도의 발전과 절차의 개선으로 접근성, 비용,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 22 338 91 11
Fax: +41 22 733 54 28

WIPO 지역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about-wipo/en/offices

© WIPO, 2021년



저작자표시 3.0
정부간국제기구
(CC BY 3.0 IGO)

CC 라이선스는 이 간행물에 포함된 WIPO
비소유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Getty Images / © Moyo Studio

WIPO 참조번호 969K/ExSum